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639

발의연월일: 2024. 8. 8.

발 의 자:김미애·안철수·김기현

이종배 · 송석준 · 박상웅

김정재 · 임종득 · 김종양

진종오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법인세율의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, 3천억원 초과 구간에 대하여 24%의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 고 있음.

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인 21.5%보다 높은 수준으로,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, 법인세최고세율을 24%에서 22%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(안 제55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과세표준 세율 5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3천억원 5천만원 + (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이하 100분의 20) 599억5천만원 + (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세율에 관한 적용례)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현 행
제55조(세율) ①내국법인의 각 사
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
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
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
산한 금액(제55조의2에 따른
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
세액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
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・상
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
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
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
한다. 이하 "산출세액"이라 한
다)을 그 세액으로 한다.

과세표준	세율
2억원	과세표준의 100분의 9
이하	- 100 E - 3
2억원	1 રોડ્ડાંડા માં કો માં (કહ્યું છે) છે
초과	1천800만원 + (2억원을
200억원	초과하는 금액의
	100분의 19)
이하	
200억원	
초과	37억8천만원 + (200억원을
3천억원	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)
이하	
3천억원	625억8천만원 + (3천억원을
초과	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)

제55조(세율) ①

개

정

안

과세표준	세율
5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00분의 10
5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	5천만원 + (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)
3천억원 초과	599억5천만원 + (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)

② (생 략)

② (현행과 같음)